#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89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 박상혁 • 박홍배 • 김준형

차지호 • 이해식 • 김주영

염태영 • 이연희 • 한민수

노종면 • 허 영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 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 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에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 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통신매체를"을 "통신매체 등을"로 하고, 같은 조중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도달하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 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2.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그 밖의 배송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13조(<u>통신매체를</u> 이용한 음란 제13조(<u>통신매체 등을</u> 이용한 음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라행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직접 또는 택배, 퀵서비스, <신 설> 그 밖의 배송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등 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 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